

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9. 28.

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

1. 건 명 :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5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9. 28. ~2026. 10. 12.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고용관리과(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26, 별관 4층 부정수급조사팀)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(0503-8803-0320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이준희(TEL 031-412-193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 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자 명단

(공고기간 : 2026. 9. 28. ~ 2026. 10. 12.)

연번	성함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손*홍	69. 03. 03	경기도 시흥시 신천5길 44, 나동 302호	처분사전통지서	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- 지급제한일: 2023. 9. 26. ~ 2023. 10. 10. - 반환명령액: 923,520원	수취인불명 (※ 출입국사실조회 결과 대상자는 2024. 11. 17. 출국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